

문서번호	건축과-11430	★담당자	건축정비팀장	건축과장	주택국장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08.06.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건축행정팀장		
방침번호			북촌사업팀장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청렴도 & 신뢰도 향상을 위한

판독용역 제3자 검수제 도입

2008. 6.

주 택 국
(건축 과)

청렴도 & 신뢰도 향상을 위한 판독용역 제3자 검수제 도입

항공사진 판독용역 성과품 검수 과정에서의 부조리 오해 소지를 사전차단 하면서 성과품에 대한 품질 신뢰성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검수를 의뢰하는 제3자 검수제를 도입·시행하고자 함.

I 용역수행 현황

기본 현황

- 과 업 : 매년 1/1200 축척 도면 3,160매 판독
- 기 간 : 용역기간 70일 - 매년 11월 발주, 12월 계약, 다음해 2월 준공
- 예 산 : 2008년 3억 7천만원 (2007년 3억 4천만원)

수행 절차

1. 용역설계 및 발주

- 공정 단축을 위해 서울시 행정구역을 4개로 나누어 분할 발주

2. 용역업체 선정

- 국토지리정보원에 영상처리업 또는 수치지도제작업 등록업체
- 공개경쟁 입찰로 4개 업체 선정

3. 용역 수행

- 4개 지구별 업무담당자 지정
- 업체 보안점검 및 작업자 교육 실시

4. 검수 및 준공

- 검수자 지정하여 납품된 용역성과 중 5% 표본검수
 - 검수기준(오류 및 누락 2.5% 미만) 충족시 준공처리
- ⇒ 성과품 검수과정에서 부조리 오해 소지의 상존

II 문제점

- 제한된 인원(6명)으로 인하여 지구별 업무담당자와 검수자가 중복
- 현 성과검수 방식은 용역업체와 직원간의 접촉이 불가피함.

III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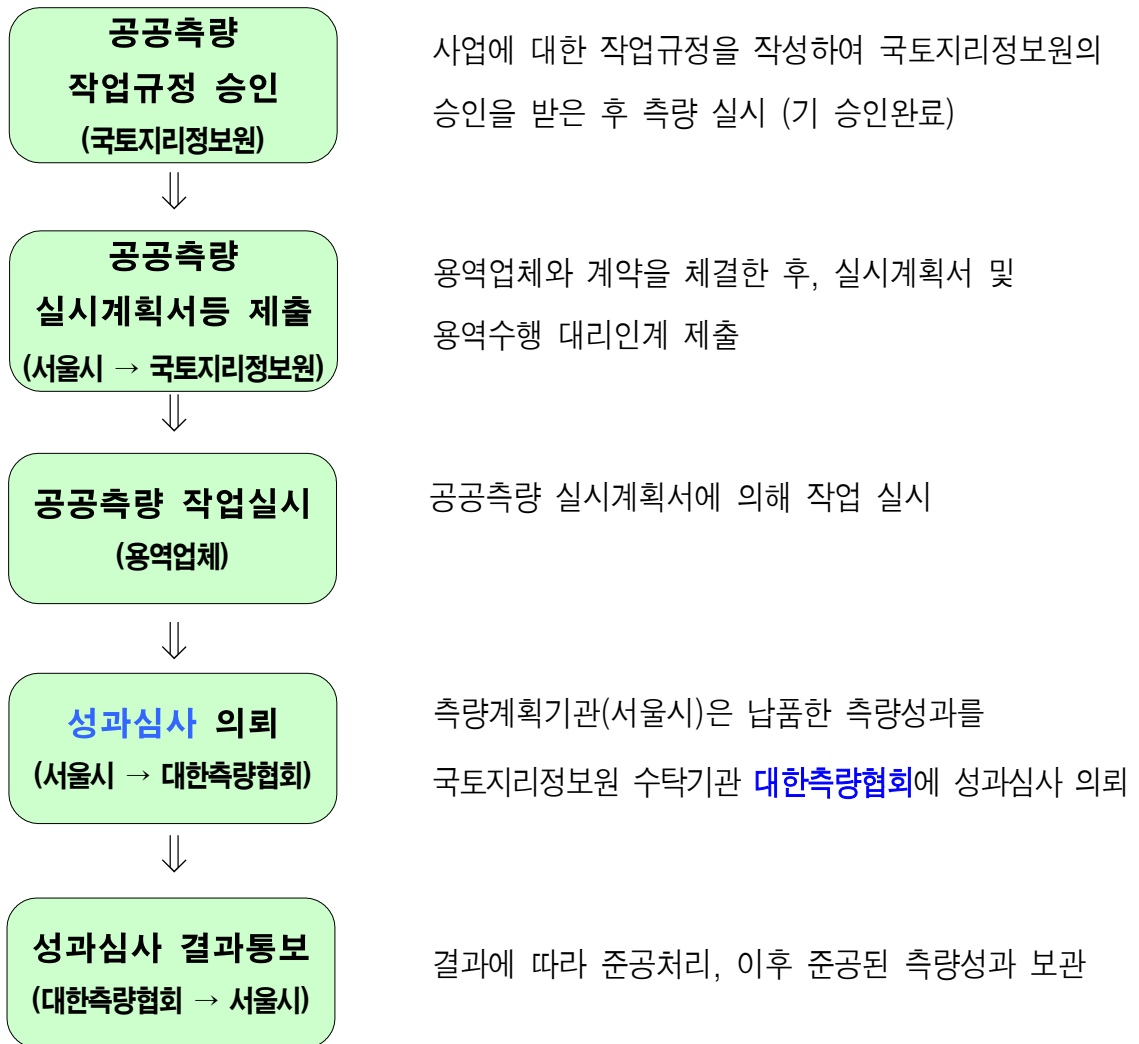
제3자 검수제(성과심사제) 도입

- 그간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검수하던 것을 외부전문기관(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용역 준공 처리
- ※ 항공사진 촬영용역 성과심사제 기 시행중
- 소요예산 : 3천만원, 성과심사비 정기예산 편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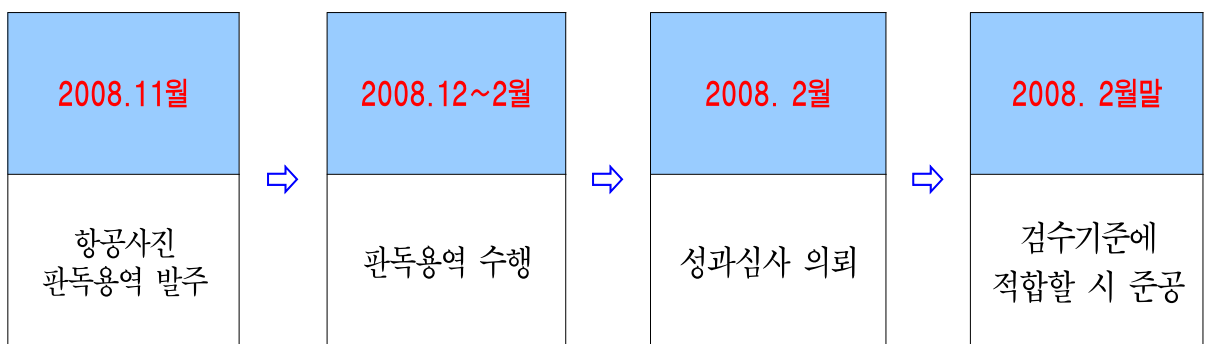
준비사항

- '08. 4. 24 심사가능여부 질의 (서울시 건축과 → 국토지리정보원)
- '08. 5. 13 측량법 제2조에 의해 공공측량 대상 (국토지리정보원 → 건축과)
- '08. 5. 28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신청 (건축과 → 국토지리정보원)
- '08. 5. 29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국토지리정보원 → 건축과)
- '08. 5. 30 측량용역대가기준 심사비 산정 통보 (대한측량협회 → 건축과)
 - 약 2천여만원

□ 공공측량 절차



□ 향후 일정



추진상 문제점

가. 금년 예산확보 곤란 : 현재 추가경정예산 신청기간 경과

① 예산 전용

- 전용과목 : 북촌팀의 민간융자금(100-501-01)
⇒ 건축정비팀 사무관리비(100-201-01)
- 전용금액 : 3천만원 (금년 물가상승률 감안)

② 자체예산 활용

- 항공사진 관독용역 예산(3억7천만원) 활용
- 용역설계시 성과심사비용 항목 신설 : 3천만원
· 예산 감소분 만큼 자체관독 수량 증가

나. 성과심사 기준(오류 및 누락 2.5% 미만) 미달시

- ① 재심사로 인한 준공지연 ⇒ 회계연도 마감 사고이월
- ②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 ⇒ 용역수행업체에서 부담

IV

기대 효과

- 용역업체와 접촉 불필요로 부조리 개연성 차단
- 용역 성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